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1463 취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7

가. 원고는 2019. 3. 29.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redacted]시 C 공장용지 3,061㎡ 외 10필지와 위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92,09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1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21. '운수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이를 영위하다 다시 2016. 5. 26. '화장품 제조업'의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원고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사실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추가한 업종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추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경 설립 당시부터 물티슈 등을 제조하여 왔고 물티슈 제조업을 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7

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판단

1) 갑1, 5호증, 갑7호증의 1, 을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8. 21. 운수관련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서비스업, 창고보관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7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회사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6. 5. 26.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물티슈 제조 및 도소매업'이 추가되었다.

② 원고의 2015년, 2016년 사업자등록상 업태 및 종목은 '서비스(운수관련)업, 운송화물포장검수'였고, 2017년에 이르러 사업자등록상 업태 및 종목이 '제조업, 화장품/기타'로 변경되었다.

③ 원고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에는 '운송수입 193,727,162원, 포장수입 262,419,238원'만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수하기 이전인 2017. 6. 12. 소외회사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물티슈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및 기구 포함)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원고와 소외회사는 2019. 3. 25.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소외회사로부터 임차한 이후부터 물티슈 생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갑7호증의 3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창업일인 2015. 8.경부터 물티슈 생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창업 이후 추가한 업종(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7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